

참고 1.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①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사)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단위: 원/톤, 부가세 별도)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단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페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	Ton	24,947
옹벽 철거공사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Ton	26,647

② 재건축·재개발 공사

(사)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단위: 원/톤, 부가세 별도)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단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페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Ton	42,608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Ton	53,023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Ton	61,197

③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사)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단위: 원/톤, 부가세 별도)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단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폐기물(페유리, 페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Ton	152,725
		그 밖의 건설폐기물(페보드류, 페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Ton	156,569

- 해설**
-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4호(2019.12.18)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6.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0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8장 대형브레이커 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페콘크리트’ 또는 ‘건설폐기물’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
[관련규정 : III.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참고 2. 산업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단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단위: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 종류	처리수수료	처리시설	폐기물 종류	처리수수료
소각시설	폐 유	액상 400,000	소각시설	일 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60,000
		고상 330,000			고분자화합물 등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73,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450,000			폐목재류 250,000
		비할로겐족 350,000			동물성 잔재물 280,000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 330,000			식물성 잔재물 280,000
		페페인트 및 페락카 340,000			오니류 300,000
	폐유독물(사업장,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독물)	1,500,0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330,000
			건설 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320,000

- 해설**
- ① 상기 처리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
 - ②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64호(2019.12.18),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4호(2020.6.10)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③ 동 처리단가는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 ④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⑤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적용한다
 - ⑥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할 수 없다
 - ⑦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가 정하는 처리수수료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 ⑧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시설 운영자가 결정한다
 - ⑨ 처리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 ⑩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⑪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처리수수료로 정할 수 있다